

영등포구의회
제141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2008. 11. 6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(專 門 委 員)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김종태 의원의 6인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8. 10. 27
- 제안자 : 김종태 의원(외 6인)

■ 개정(제안) 이유

-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일반가정에서 도입·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보조금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
(안 제8조의2 제1항)
- 지원금액은 1가구에 1대분에 한하여 구입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, 지원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
(안 제8조의2 제2항)
- 신청을 원하는 자는 동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영수증과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, 동장이 구청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송부하면 구청장은 확인하여 신청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함**(안 제8조의2 제3항 내지 제5항)**

■ 관련법규

- 「폐기물 관리법」 제15조

■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

- 양천구, 서초구

■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정책의 일환으로 감량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가정에 1가구당 1대분에 한하여 구입금액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최고 20만원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- 감량기기 보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타자치단체는 양천구·서초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,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
- 그러나 각 가정에서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건조(감량)하였을 경우에도 관내 거점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하는 문제점이 있어 건조된 물량만을 별도 수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감량(수분제거)효과를 거둘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8. 11. 6

보 고 자 : 이 남 식

참고자료 : 관련법령

관 련 법 규

■ 폐기물관리법

제14조 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①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·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 <개정 2007.8.3>

제15조 (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)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"생활폐기물배출자"라 한다)는 관할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7.8.3>